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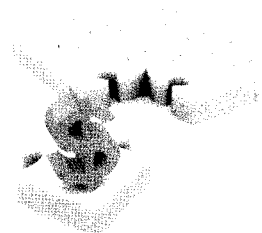


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

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정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코자합니다.

》》 1. 창업초기 기업 육성 자금

- 사업목적
 -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- 융자규모 : 10,000억원
- 신청대상
 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 -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 -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- 융자범위
 - 시설자금
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

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, 인수·합병)
-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

○ **운전자금**

- 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■ **용자조건**

- **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7%p차감(기준금리)**
 - *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 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(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)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('09년 4월 예정)
- **대출기간**
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■ **용자방식**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》》 2. 개발기술사업화자금

■ **사업목적**

-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
■ **용자규모 : 1,580억원**

■ **신청대상**

- 제조업,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(별표 4)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-Biz기업
 -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 -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
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- 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-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
■ 용자범위

- 시설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 등

■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7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■ 용자방식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(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)

》 3.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자금

■ 사업목적

- 지역별 전략산업·특화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

■ 용자규모 : 1,000억원

■ 신청대상

- 수도권외의 지역(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)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「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(별표5)」, 지방중소기업청장·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(별도공고)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

화하고자 하는 Inno-Biz기업

-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-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- 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-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
■ 용자범위

- 시설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 등

■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7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9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 -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7억원)

■ 용자방식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(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)

4. 신성장기반 자금

■ 사업목적

-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

■ 용자규모 : 11,900억원



■ 신청대상

-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 -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용자. 다만,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
 - 혁신형기업, 신성장유망 중소기업,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용자시 우대
-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(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)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 - *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

■ 용자범위

- 시설자금
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 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, 인수·합병)
 -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('09년 한시 적용)
 - 부지매입비, 조성공사비(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)
- 운전자금
 -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40% 이내)

■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- *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■ 용자방식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>> 5.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자금

■ 사업목적

- 지역별 전략산업·특화산업 영위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

■ 용자규모 : 3,000억원

■ 신청대상

-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, 지방중소기업청장·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- 혁신형기업,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은 용자시 우대

■ 용자범위

○ 시설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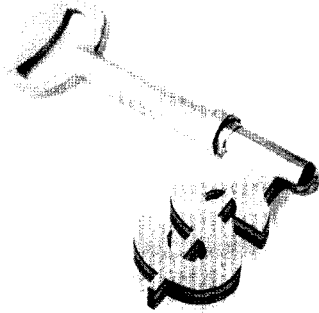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, 인수·합병)
 -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'09년 한시 적용)

○ 운전자금

-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40% 이내)

■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9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 -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7억원)



■ 용자방식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》》 6. 긴급 경영안정 자금

■ 사업목적

-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■ 용자규모 : 7,000억원

■ 신청대상

- 긴급경영안정사업,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
- 긴급경영안정사업의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- 수출금융지원사업의 용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 - *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(약정기간 누계기준)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제외

■ 용자범위

- 긴급경영안정사업
 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 -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(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 기업에 한함)
 -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(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)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(재해중소기업)의 직접피해복구비용
 -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- 수출금융지원사업
 -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,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/O)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

■ 용자조건 및 방식

- 긴급경영안정사업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저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
- *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
- *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- * 재해중소기업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1.23%p차감(기준금리)
- 용자방식 :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(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)

○ 수출금융지원사업

- 대출기간 : 180일 이내
- *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(최장 1년 이내)
- 대출한도 : 업체당 10억원 이내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33%p차감(기준금리)
- 용자방식 :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, 보증서부(한국수출보험공사)직접대출

〈 신청·접수 및 문의처 〉

지역	전화	지역본(기)부	전화	지역본(지)부	전화
서울(여의도)	02)769-6812	전남서부(목포)	061)287-7755	경기북부(고양)	031)920-6700
서울동남부(서초)	02)2156-2212	전남동부(순천)	061)724-1056	충북(청주)	043)230-6811
대구·경북(대구)	053)601-5300	대전·충남(대전)	042)866-0123	전북(전주)	063)210-9922
경북중서부(구미)	054)476-9314	충남북부(천안)	041)621-3681	경남(창원)	055)212-1350
경북동부(포항)	054)223-2041	인 천	032)450-0521	강원(춘천)	033)259-7621
부 산	051)630-7400	경기(수원)	031)259-7922	강원영동(강릉)	033)655-8873
광주·전남(광주)	062)600-3000	경기서부(시흥)	031)496-1081	울 산	052)703-1130
제 주	064)751-2052				

- *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및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자
- * 추진일정 : 2009. 1. 2 ~ 자금 소진시까지